##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0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문대림・김 윤・문금주

강득구 · 김영호 · 이병진

이원택 • 양문석 • 윤준병

박용갑・임호선・주철현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,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귀농어·귀촌 지원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함)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이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

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,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업 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~	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
	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
	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
	의견을 들어야 한다.
<u>⑤</u> ~ <u>⑦</u> (생 략)	<u>⑥</u> ~ <u>⑧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7
	항까지와 같음)